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집 운반 대상 변경(안 제4조제2항)
 다.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 징수 조항 삭제(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17. 9. 21. ~ 10. 11〕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을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징수”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서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법리 검토결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가축분뇨의 처리 등에 보다 많은 양돈 농가가 포함되어 축산폐수처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